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1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2022년 3월 8일

O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3.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 O 관련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는 해당 조문을 삭제

4. 주요내용

- O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안 제4조제4호)
-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5호, 제6호 삭제 및 제8호 신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의 심의사항을 대신하도록 함(안 제4조제7호)
- 그 밖의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까지 및 안 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O 이번 본 조례 개정과 같은 회기 심사되는 제정·개정 조례안에 따라 통합·운영하게 되는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음.

 통합위원회명	통합 운영(심의) 위원회	비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 원회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지난 2020년 정부에서도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574개 가운데 16%인 89개 위원회를 정비한 사례를 볼 때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 O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더라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에 일부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합리성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O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